

202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2021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3월 10일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2021.3.10.~ 2021.3.31.

* 지원 수요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 aT와 동일사업이므로 중복신청 불가하며, 타 기관과 인증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지원신청 불가

3. 지원대상 품목

농림축산식품

○ 신청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임·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김부각 포함),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4. 지원대상 인증제도

No	인증명		비고
1	ISO22000		ISO22000과 FSSC22000은 중복신청 불가(택일)
2	GFSI 승인인증	FSSC22000	
3		BRC	
4		SQF	
5		IFS	
6		Global GAP	
7		China HACCP	
8	유기인증	USDA NOP	수출목적의 인증 취득이어야 하며,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수출 포장재 또는 수출 진행 증빙자료 첨부
9		EU Organic	
10		JAS	
11		중국유기인증	
12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13	Halal		
14	Kosher		
15	Vegan		
16	EAC		
17	Gluten-free		
18	NON-GMO		
19	재외국 등록	USA FDA (미국)	
20		BPOM (인도네시아)	
21		VFDA (베트남)	

*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비율

○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 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천원 지원

□ 예산 지원비율

구분	배정예산 비율
수출실적(전년도 수출실적 USD 1,000\$ 이상) 보유업체	연간 예산 70%
수출예정업체	연간 예산 30%

* 예산상황 등에 따라 비율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 정산기한: 2021.11.30.까지 (수시 정산)

* '21년 인증취득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만 정산가능, '21년 이전 인증취득을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 완료('21년 인증서 발급)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 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 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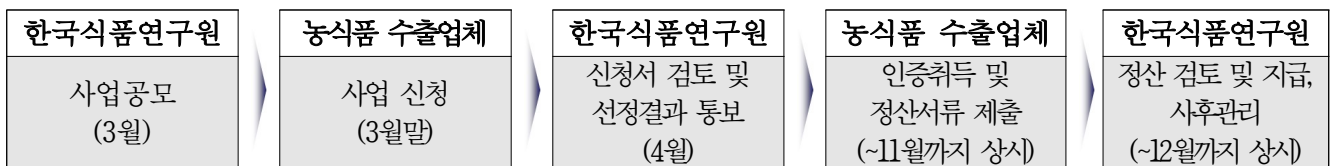
- 계량평가(60점): 수출성장성(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및 수출준비도 평가
- 비계량평가(4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 [별첨1] 지원업체 선정평가표 참조

** 대기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예산상황에 따라 3~4분기에 선정됨. 선정기준은 인증완료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예산배정.

(대기업체는 인증완료 시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에 변동사항 입력)

7. 추진절차



II. 세부사항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지원신청서, 수출현황, 인증취득·수출 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선정기한: 모집기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메일 개별통보 및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여부 확인

신청 필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등 2020 매출액 증빙서류

○ 2019/2020 수출실적증명원

* 신청서 작성 미비, 필수서류 누락, 수출실적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선정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음

2. 정산방법

정산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정산신청서, 정산세부내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정산기한: 쉐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 필수 구비서류

○ 취득인증서 사본

○ 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3. 기타유의사항

○ 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2020~2021년 공고일까지)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온라인 동의)하여야 함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 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 10.31 이후 취소업체는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됨

○ 신청인증 일부 취소 및 컨설팅기관 변경은 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진행 가능함

* 컨설팅기관 변경은 인증 단독추진으로 신청 후 추후 컨설팅 의뢰 변경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선정취소, 지원금 반납조치, 차년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컨설팅기관의 지원금 부정수급 제안(기업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허위 제안), 컨설팅비용 과다책정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의 제안을 받은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에 신고바람
- 선정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청 시 진행현황을 보고(온라인 입력)하여야 함

4.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https://www.foodcerti.or.kr>)
이화나 기술기능원(1899-0559, leehn08@kfri.re.kr), 김유리 선임기술원(1899-0559, yuri@kfri.re.kr)

[별첨 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202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평가표

1. 적합성 확인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인증 적합성	취득(예정)인증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
	취득(예정)인증 품목의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
	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2. 계량평가(60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5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미만
수출 성장성 (50점)	전년도 총 매출액 (금액기준)	20	5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미만
			20	17	14	11	8
	전년도 수출실적	20	50만불 이상	30만불이상 50만불미만	10만불이상 30만불미만	10만불미만	실적 없음
			20	16	12	8	4
	수출증가율 (2020수출액-2019수출액)/ 2019수출액*100	10	10%이상	8%이상 10%미만	4%이상 8% 미만	4%미만	0이하
			10	8	6	4	2
수출 준비도 (10점)	외국어 카탈로그 (인쇄본 기준)	5	보유		미보유		
			5		0		
	업체 단독 인증추진	5	인증 자체추진		인증 컨설팅 의뢰		
5			0				

3. 비계량평가(40점)

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인증취득계획(20점)	인증취득 필요성 및 타당성	10	10	9	8	7	6
	인증취득 추진계획	10	10	9	8	7	6
인증연계 수출계획(20점)	제품현황	10	10	9	8	7	6
	수출 추진계획	10	10	9	8	7	6
계		40	40	36	32	28	24

* 우선 선정 기준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우선 선정
- 동일점수 일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수출액이 많은 업체

[별첨 2] 정산기준

202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기준

1. 정산개요

□ 정산신청금액

○ 정산비용 산출 (정산예시 참조)

- 인정소요비용 [정산 확정된 ‘인증비’ (a) + 정산확정된 ‘대행비’ (b)] x 70%=정산신청금액
- 정산확정된 ‘대행비’ (b)는 인정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정산

※ 정산예시

● 정산신청금액 = 인정소요비용[6,300천원(a) + 5,600천원(b)] x 70% = 8,330천원

· 정산확정된 인증비(a) : 6,300천원 (심사비 5,000천원 + 항공료 800천원 + 분석비 500천원)

· 정산확정된 대행비(b):

- 컨설팅비 4,000천원 한도 적용 : 5,600천원 (컨설팅비 4,000천원 + 교육비 800천원 + 인증대행수수료 800천원)

- 대행비는 인정소요비용의 50% 한도 적용 : (6,300천원 + 5,600천원) x 50% = 5,950천원
(대행비는 전체 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 있으므로, 산정된 금액이 정산 확정된 대행비가 됨)

· 정산신청금액: (정산확정된 인증비 6,300천원 + 정산확정된 대행비 5,600천원) x 70% = 8,330천원

[소요비용]

구 분	정산세부항목	소요비용(원)	인정소요비용(원)
인증비 (a)	심사비	5,000,000	정산확정된 인증비(a) 6,300,000원
	실사비(항공료)	800,000	
	제품분석비	500,000	
	소계	6,300,000	
대행비 (b)	컨설팅비	5,000,000(4,000,000)	정산확정된 대행비(b) 5,600,000원
	교육비	800,000	
	인증대행수수료	800,000	
	소계	6,600,000(5,600,000)	
합계		12,900,000	(6,300천원 + 5,600천원) x 70% = <u>8,330,000원</u>

□ 정산불가 사항

- 시설설치비, 물품구입비,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 식비, 유류비, 선물비, 타업체 방문을 위한 실사비, 렌터카 비용 등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정산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
- 증빙자료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항목
- 정산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 정산 불가

2. 정산 세부항목 및 기준

구분	정산세부항목	기준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의 인건비,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심사비 및 등록비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실사비(항공료) * 해외에 소재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항공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실사단(최대2인)의 국제선 왕복항공료(economy) - 항공권(e-ticket) 또는 여행사 거래명세서, 지출증빙사본 및 실사단 한국체류 세부일정 * 실사단이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 항공료는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
	제품분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및 시료 운송비 (운송비 16만원 한도) -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분석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운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인증·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 (필요 시 증명자료 제출)
대행비	통·번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 - 통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통역 현장사진 - 번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번역 결과물(원문 및 번역본) *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컨설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컨설팅 비용 (인증별 4,000천원 한도) - 컨설팅보고서, 컨설팅 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예비심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비용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해당 인증제도 교육비용(인증별 최대2인) - 교육기관 이수증, 교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신청 불가 ** 집합교육은 교육비용/참석인원수 x 2인으로 산출 (참석자명단 제출)
	인증대행 수수료 * 해외에 소재한 인증·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대행(인증신청 및 접수 등)을 위한 수수료(200만원 한도) -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지출증빙사본: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계좌이체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별첨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사유
지원기준	예산배정 시 수출실적 보유여부 미설정	수출실적 보유업체 70% 수출예정 업체 30% 예산 배정	수출실적 연계성 강화
선정기준 및 방법	사후심사/갱신심사 수출실적 기준 신설	신설 기준 본격시행 (사후/갱신 신청 시 수출실적 보유 필수)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 60점	계량평가 60점/ 비계량평가 40점, 선정평가표 전반 강화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가중치 부여 등)	
지원대상 인증제도	ISO22000, FSSC22000 중복지원	ISO22000, FSSC22000 중복신청 불가(택일)	FSSC22000은 ISO22000 요구사항 포함 및 수출실적 연계성 강화
정산기준	인증대행수수료 한도 미설정	인증대행수수료 200만원 한도 설정	과다 비용 청구 방지